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9. 25 선고 2019가단668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9. 25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. 12. 6. 접수 제102033호, 2003. 2. 18. 접수 제15550호로 각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임수희

별지